#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64

발의연월일: 2025. 2. 3.

발 의 자:이인선・고동진・배준영

김태호 · 김정재 · 이달희

김기현 · 성일종 · 최은석

정동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조세특 데제한법에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상생결제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대한 세액공제) 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	
는 내국인이 <u>2025년 12월 31일</u>	<u>2030년 12월 31일</u>
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	
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	
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	
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	
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	
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	
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	
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	
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	
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	
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	32조=	를 제 5	리하고	1 0	하	에
서	같다	})에	대한	소득	세민	<u>}</u>	해
당현	한다]	또는	- 법 (	<u>민</u> 세어	l서	공	제
한다	7.	다만,	공제	받는	급	액	0]
해딩	당 고	<b>가세연</b>	도의	소득	-세	또	는
법인	<u>민</u> 세.	의 10	0분의	10을	호	과	하
는	경우	-에는	100-	분의	10을	)	한
도둑	근 히	다					

②・③ (생 략)

•
•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